

영등포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4.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7호로 2015년 4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출산휴가의 기간 및 분할 사용 기간에 관한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안 제24조 제2항)
- 나.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 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 가능(안 제24조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태아¹⁾ 임신공무원이 난산·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산·사산 경험 및 노령(만 40세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다태아의 경우 59일)의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다태아·단태아 구분없이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 90일	다태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 120일 단태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 90일
출산 전·후에만 휴가	유·사산 경험 및 노령(만 40세이상) 등은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44일 (다태아 59일)분할 사용 가능

1)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가 임신되어 있는 상태, 즉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등을 말함

○ 개정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2013.5.30 “다태아 출산휴가 연장·엽산제 등 지원확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태아를 임신·출산하는 여성에게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여 실질적 평등에 따른 모성보호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2014.1.21)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14.6.30)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음.

○ 2014.8.26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확정)」 자료에 의하면 최근 난임 부부 치료 (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하면서 총 출생아 중 다태아의 구성비가 2003년도 2.02%에 비해 2013년도 3.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13.5.30 국민권익위원회 보도 자료에 의하면 다태아의 조산²⁾율이 단태아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숙아³⁾로 태어나는 비율도 55.4%로 단태아의 3.7%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음.

2)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37주 이전에 조기 출산

3) 2.5kg 미만

- 이와 같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다태아 임신은 단태아에 비해 유산·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높고,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다태아를 임신 또는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하는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며,
- 아울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현실적인 제안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자료1】 통계청 (2014.8.26), 「2013년 출생 통계(확정)」 9쪽

▶ **다태아 출생 비율 및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 생 아 수	계	486,196	469,239	431,881	445,170	490,787	463,743	443,045	468,150	471,023	484,229	436,209
	단태아	476,388	459,359	422,422	434,403	477,331	450,953	430,983	455,309	457,171	468,608	421,837
	다태아	9,808	9,880	9,459	10,767	13,456	12,790	12,062	12,841	13,852	15,621	14,372
	쌍태아	9,736	9,818	9,393	10,683	13,280	12,653	11,905	12,633	13,583	15,321	14,115
	삼태아 이상	72	62	66	84	176	137	157	208	269	300	257
구 성 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태아	97.98	97.89	97.81	97.58	97.26	97.24	97.28	97.26	97.06	96.77	96.71
	다태아	2.02	2.11	2.19	2.42	2.74	2.76	2.72	2.74	2.94	3.23	3.29
	쌍태아	2.00	2.09	2.17	2.40	2.71	2.73	2.69	2.70	2.88	3.16	3.24
	삼태아 이상	0.01	0.01	0.02	0.02	0.04	0.03	0.04	0.04	0.06	0.06	0.06



【자료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13.5.30)
 다태아 출산휴가 연장·엽산제등 지원확대」 6쪽

▶ 단태아와 다태아의 조산율 ('13년, 보건복지부)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태아	4.0	4.2	4.3	4.5	4.5
다태아	47.9	51.1	52.5	53.7	54.2

▶ 단태아와 다태아의 미숙아 출생비율 ('13년, 보건복지부)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태아	3.3	3.3	3.5	3.5	3.5	3.7
다태아	48.2	52.7	53.3	54.4	54.5	55.4

【자료3】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자료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

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전문개정 2010.7.15.]